

7-2-1 원거리 실습 학생 지원 지침

<구. 원거리 선택실습 학생 지원 지침 - 개정 2023.2.6.>

제1조(목적) 이 내규는 간호학 실무실습 운영세칙 제14조에 따라 원거리 실습 학생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개정 2023.2.6.>

제2조(정의) 원거리 실습(이하 실습)이라 함은 전주시를 벗어난 국내 지역과 해외 지역에서 실시하는 실습을 말한다.<신설 2024.10.00.>

제3조(실습지도교수의 지정) 학부장은 매년 초 실습기관별로 지도교수를 지정한다.<개정 2023.2.6.>

제4조(실습지도교수의 임무) 실습지도교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학생실습 제반 사항에 대한 실습기관과의 협의
2. 현장실습의 지도 및 지도의 위임
3. 실습기간동안의 생활지도
4. 실습성적 평가
5. 기타 실습과 관련하여 간호학부장이 요청하는 사항<개정 2023.2.6.>

제5조(보고) 실습지도교수는 실습운영 및 결과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해 간호학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6조(학생재정지원) 실습학생에 대한 재정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① 국내 원거리 실습의 경우 실습비, 교통비 등 일부 지원 <개정 2024.10.7.>
 1. 전북특별자치도 내 원거리 실습의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3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 2. 전북특별자치도를 벗어난 원거리 실습의 경우,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4만원의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- ② 해외 실습학생의 경우 항공료, 체류비, 숙박비 등 경비 일부 지원

제7조(지도교수지원) 실습지도교수가 국내 및 해외 현장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는 우리대학 국내·외 여비 지침에 따라 지원한다.

제8조(실습생 의무) 실습학생은 간호학실무실습 운영세칙 제10조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부모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
제9조(관리) 이 지침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간호학부 실습교육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1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지침은 2024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.